

의안번호	제 42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5월 29일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영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6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 의 자 : 임영은·박우양·박문희·이상식·
이상정·박재완·이의영 의원(7인)

1. 제안 이유

- 우리도와 교류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류 중인 외국 자치단체에게 재난·재해 등에 대해 구호지원 규정 마련(안 제8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와 협의완료

7.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생략함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난·재해 구호지원) 도지사는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지원 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7조(생 략) <u><신 설></u>	제1조 ~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재해 구호지원) 도지사는 <u>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